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부설 원격평생교육원 규정

2015. 04. 01.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급변하는 시대에 원격교육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원격평생교육원(이하 ‘본원’ 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본원은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7-13 IGSE Language Center 내에 두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http://sce.igse.ac.kr> 로 한다.

제3조(사업) 본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온라인영어교육 강좌
2. 온라인학점은행제 운영
3. 온라인자격증취득 과정
4. 취업아카데미 과정
5. 무료 공개 강좌
6. 그 밖에 원격평생교육원 설치 목적에 부합한 교육

제2장 조 직

제4조(조직) ①본원은 원장을 두며 원장은 평생교육원장이 겸임한다.

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학사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평생교육사와 조교를 둘 수 있다.

제5조(업무) 본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1. 입학 홍보 및 상담
2. 강의 콘텐츠 제작 및 관리
3. 학습관리시스템 관리

4.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5. 강의평가 관리
6. 성적관리
7.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①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제7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원 운영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9조(의결)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장 학사운영

제10조(모집) 본원 학습생 모집은 설치과정별 학사일정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제11조(학습 자격) 본원은 연령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학습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미취학자는 제외한다.

제12조(지원 절차) 본원은 회원제로 운영하며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한하여 수강 자격을 부여한다.

제13조(학습비) ① 학습비는 콘텐츠개발비, 강사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한다.

② 학습비는 카드결제,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납부한다.

③ 학습비 반환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며, 학습비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원의 설치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원격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정지된 경우
2. 본원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4. 학습비 반환 요청 시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에 의거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 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해당액
		총 수업 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해당액
		총 수업 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 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습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근로 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강료의 납입이 곤란한 자
3. 보훈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4. 기타 원장이 학습비 면제 또는 감액이 필요하다고 정한 자

제14조(수업) ①본원의 수업은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석 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원 강의실을 활용한다.

②본원의 수업은 본원이 위촉한 교·강사가 담당한다.

제15조(수료와 상벌) ①본원의 수료자는 과정의 교과목을 80%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②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행실이 바른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퇴학) 본원은 다음 각 호의 학습자에 대하여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본원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2. 자진 퇴학을 신청한 자
3.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료 교육을 받게 한 자
4. 기타 원장이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계속한 자

제6장 회 계

제17조(회계연도) 본원 회계연도는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예산편성) 원장은 매년 다음해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12월중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수입원) 본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학습비
2.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보조금
3. 위탁교육훈련 지원금(위탁훈련시)
4. 기타 수입

제20조(회계집행) 본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원에서 관장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